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협조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나아가 보험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0.10.1.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3. 동 제도는 2010.10.1. 이후 최초로 구입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적용(약가차액 지급 및 약가 인하)되므로, 우리 부는 동 제도 적용대상 약제의 확인을 위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자료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공급내역 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4. 따라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별지 제68호서식(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서식)에 “요양기관기호”를 추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 개정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서식

연번	공급자 업체	계약 방법	공급 구분	공급 형태	공급받은 자			제품 명	제품 코드	규격	공급 수량	공급 일자	공급 금액	공급 단가	비고	
					명칭	사업자 등록 번호	요양 기관 기호									

5. 아울러, 동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2010.10월 공급내역부터** 개정 서식에 따른 공급내역 신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약품 공급업자(제약사, 도매상)에게 협조요청한 상태입니다.

6. 따라서, 의약품 공급업자(제약사, 도매상)가 개정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서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귀 협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주무관 **방은옥** 행정사무관 **신봉춘** 보험약제과장 **김상희** 전결 09/17

협조자

시행 보험약제과-1857 (2010. 09. 17.) 접수
우 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8층 / <http://www.mw.go.kr>
전화 02-2023-7428 전송 02-2023-7458 / happy44@korea.kr / 대국민공개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